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보호자 교육 명시 >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51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보호자 교육 명시	2
【참고자료1】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및 운영 현황	8
【참고자료2】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교육 주요 커리큘럼	11
【참고자료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Ⅲ. 검토의견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보호자 교육 명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보호자 교육을 명시하여,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u>유아 체험교육 등을</u>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 ----- ----- ----- ----- <u>유아 체험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관련하여 실시한 연구¹⁾에 따르면,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교육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603명 중 568명(94.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2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12.10., pp. 129-130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568명에게 부모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24.0%)’, ‘긍정적 훈육 방법 및 양육태도(18.2%)’, ‘자녀의 인성, 문제행동(17.7%)’, ‘부모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우울증, 스트레스 대처법)(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보호자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교육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제3조²⁾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로,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교육부 유관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등³⁾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3)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은 주로 양육정보 제공, 체험·놀이프로그램, 자녀의 권리 존중 및 양육태도, 심리상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비교】

구분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의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을 담당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의 명칭 사용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지자체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
설치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	영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등
사업목적	-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교재 개발 - 유치원 교원 연수 및 유치원 평가 -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일부 달리 담당하는 경우 있음	-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 부모교육 및 상담 ,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간제 보육서비스, 놀잇감 대여 등 가정 양육 지원
설치현황 (‘24.9. 기준)	본원 16개(경기 2개, 경북·세종 없음) 분원 19개	중앙 1개, 시·도 육아중 18개, 시·군·구 육아중 118개

자료: 교육부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 8. (생략)
-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 2., 2024. 2. 13.>
1. ~ 7. (생략)
 8. 영유아 보육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9.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10. (생략)

한편,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⁴⁾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 조항은 「유아교육법」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정]의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24. 9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개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 중임.⁵⁾ < 참고자료1: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및 운영 현황 >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연구, 정보제공·보호자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교원연수, 유치원 평가 및 유아체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 16개소⁶⁾(본원 기준) 모두 보호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과 경북은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①유아 및 보호자 대상 전문상담 지원(맞춤형 가족지원), ②학

4)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5)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1일 기준 유아교육진흥원 미설치 시도교육청은 세종과 경북이고, 경북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 중에 있음.

6) 15개 시도교육청에서 16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경기도 2개소)·운영 중임. 다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지 않은 세종과 경북은 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부모 연수(학부모 캠퍼스), ③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
등임. < 참고자료2: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교육 주요 커리큘럼 >

참고로, 정부의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에 따르면,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의 추진과제로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호자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 문화 확산 및 부모교육 지원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부모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 단위유치원의 현장 중심 부모교육 지원,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인 부모교육 추진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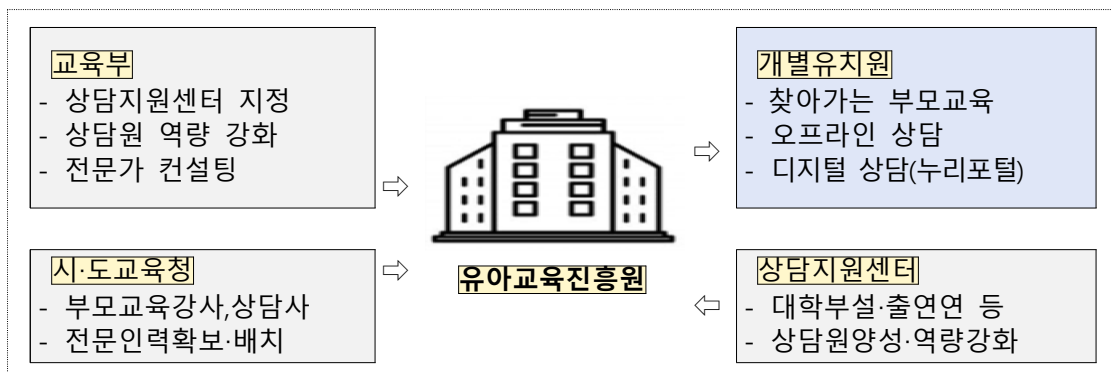
< 참고자료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 >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

- 시·도별 교육 강사·상담 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배치**(위탁도 가능)
- 영유아 발달 등과 관련한 컨설팅으로 체계적 양성이 가능하도록 **중앙 차원의 역량 연수 및 전문가 컨설팅** 추진('24~)

※ ('23) 시도교육청 협의 → ('24~)인력배치 → ('25)육아종합지원센터 협업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한 상담 운영 지원 체계도>



※ 지원체계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및 Wee센터(現 초중등) 연계 검토

자료: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

따라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현재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보호자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교육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에 기여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개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교육(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사항을 법률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자료 1】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및 운영 현황

<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근거 >

(2024. 9. 1. 기준)

구분	시도	설립 근거 조례
1	서울	· 「유아교육법」 제3조, 제6조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제4572호 설치조례」(예산법무담당관-9763, 2007. 9. 27.)
2	부산	· 「유아교육법」 제6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3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제39조
4	인천	· 「유아교육법」 제6조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5조~제37조
5	광주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6331호 2024.1.1. 일부 개정) 제9절 제33조~35조
6	대전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 7. 19.)
7	울산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8조(큰나무놀이터)
8	세종	· 해당사항 없음(진흥원 미설치)
9	경기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2절 제46조
10	강원	· 「유아교육법」 제6조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 수립(2006. 6. 23.)
11	충북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43호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629호
12	충남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64호(2009.12.30.)(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783호(2020.7.10.)(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221호(2022.9.1.)(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13	전북	· 「유아교육법」 제6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의2(설치)
14	전남	·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882호(2024.1.1.) 제12절(전라남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15	경북	· 해당사항 없음
16	경남	·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17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335호)

자료: 교육부

<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현황 및 주요업무 >

('24. 9. 1. 시도 제출자료 기준)

순	시도	구분	공식 명칭	설립 연도	추진업무 범례: ○ 추진업무/ X 미추진업무 ◆ 다른 기관에서 추진							
					유아 교육 연구	정보 제공 · 보호자 교육	프 그 램 및 교 재 개 발	교 원 연 수	유 치 원 평 가	유 아 체 험 교 육	유 아 상 담	기타
1	서울	본원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07	○	○	○	○	○	○	○	
2	부산	본원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09	X	○	○	○	X	○	○	
		분원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놀이체험센터	2019	X	X	X	X	○	○	X	
3	대구	본원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6	○	○	○	○	○	○	○	어린이집 유아 체험 및 상담 운영
4	인천	본원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	방과후 공무직 연수 등
5	광주	본원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0	○	○	○	○	○	○	○	방과후 과정 담당자 연수 등
6	대전	본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2013	○	○	○	○	○	○	○	교육공무직 연수 등
7	울산	본원	울산유아교육진흥원	2011	○	○	X	○	○	○	X	교육연구·동화구연연구 대회,교원연수
		분원	큰나무놀이터	2021	X	X	○	X	X	○	X	
8	세종	본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유아교육부	2019	○	X	○	○	◆	○	○	자원봉사자 연수 유치원·어린이집 연수
9	경기도	본원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2004	◆	○	○	○	◆	○	○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유·보·초 이음교육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2024	○	○	○	○	◆	○	X	어린이집 유아 체험, 보육교직원 연수, 중고등학교 진로체험
10	강원도	본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10	○	○	○	○	X	○	○	
		분원	평창유아체험학습장	2014						○		
			속초유아체험학습장	2015						○		
11	충북	본원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	유치원 맞춤형지원(문화예술공 연, 창의인성 강사지원)

순	시도	구분	공식 명칭	설립 연도	추진업무 범례: ○ 추진업무/ X 미추진업무 ◆ 다른 기관에서 추진							
					유아 교육 연구	정보 제공 · 보호자 교육	프 그 램 및 교 재 개 발	교 원 연 수	유 치 원 평 가	유 아 체 험 교육	유 아 상 담	기타
12	충남	본원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10	○	○	○	○	○	○	X	
		분원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2020	X	X	○	○	X	○	○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2022	X	X	○	○	X	○	○	
13	전북	본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	미래교육체험 등
		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1998		○				○		
14	전남	본원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3	○	○	○	○	◆	○	○	
15	경북	분원	포항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교원연수장소대여
			경주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김천유아교육체험센터	2012	X	X	X	X	X	○	X	
			구미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X	X	X	X	X	○	X	
			영주유아교육체험센터	2012	X	X	X	X	X	○	X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	2015	X	X	X	X	X	○	X	
			상주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X	X	X	X	X	○	X	
			경산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칠곡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X	X	X	X	X	○	X	
16	경남	본원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01	○	○	○	○	○	○	○	
		분원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2008	○	◆	◆	○	◆	○	◆	과학체험연수 등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2014	○	◆	◆	○	◆	○	◆	생태체험연수 등
17	제주	본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012	○	○	○	○	○	○	X	교육공무직 연수 등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2】 유아교육진흥원 보호자 교육 주요 커리큘럼

(2024. 9. 1. 기준)

구분	시도	보호자교육 실시여부	주요 교육 내용(커리큘럼)
1	서울	○	· 학부모 연수(학부모 캠퍼스) · 유아 및 보호자 대상 전문 상담 지원(맞춤형 가족지원프로그램)
2	부산	○	· 행복한 부모되기 학부모 교실 · 성장하는 가족 교실 · 건강한 가족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 및 학부모 상담
3	대구	○	· 현장지원 부모교육(맞춤형 유치원 설계 부모교육) ·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유아 상담 및 부모 상담
4	인천	○	· 유아 및 학부모 상담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 학부모 및 조부모 동아리
5	광주	○	· 유아 심리 정서 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및 양육 방법 · 자녀 이해와 긍정적인 부모 역할 등 맞춤형 학부모 교육
6	대전	○	· 성숙한 부모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상담(사랑이음 집단상담, 마음 이음 모바일상담, 바로이음 놀이치료) ·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7	울산	○	· 조부모와 함께하는 응급처치 ·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체놀이 · 조부모와 함께하는 힐링요가 · 보호자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8	세종	-	· 진흥원 미설치(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 담당)
9	경기	체험 교육원	남부 · 부모 정서 및 자녀양육교육(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연계)
			북부 · 부모교육(보호자 욕구코칭 및 자녀양육법)
10	강원	○	· 보호자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보호자 연수 · 보호자 양육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마음 챙김 연수
11	충북	○	· 유아 정서행동 관찰프로그램, · 공감에 있는 유아 및 학부모 상담, 맞춤형 학부모 교육
12	충남	○	· 연수 운영: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보호자교육, 지역사회 연계 보호자교육 · 전문가와 함께하는 권역별 보호자 교육 운영
13	전북	○	· 유아의 미래역량을 위한 부모의 역할 · 긍정적인 학부모-자녀 관계 회복을 위한 보호자 역량 강화
14	전남	○	·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보호자 놀이 아카데미 운영 · 보호자 지원을 위한 원격연수 운영(3종)
15	경북	-	· 도교육청에서 해당 업무 담당
16	경남	○	· 유아 정서·행동 관찰프로그램 · 학부모 심리상담, · 학부모 연수 · 유아·학부모 개별상담
17	제주	○	· 초등 예비 보호자 교육 · 현장지원형: 생태놀이, 유아 및 보호자 (10개원) · 현장기획형: 공감소통보호자교육, 보호자(10개원)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 4.)

비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	
정책 목표	-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출발선을 보장 - 자율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 지능형 나이스 안착을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핵심과제		추진과제
I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① 유보통합 및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②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③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④ 디지털 치유 및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 ⑤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II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① 유아교육지원체제 개편 및 자율성 강화 ②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초 연계 지원 ③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④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III	교원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	①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② 다양한 지원 확대 및 자격제도 활성화 ③ 교권의 보호와 권익 증진 ④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IV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① 지능형 나이스 안착 ②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 ③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 ④ 누리포털 고도화 및 거버넌스 확대

[2-4]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 보호자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정과제

- 유아기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24)

※ 유아교육법 개정

□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 문화 확산

※ 유아교육 홍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24) → 홍보 추진('24~)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유·초연계교육 의미 등 학부모·교원,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23~)

※ TV 송출, 지면 기고·칼럼, 교육감 인터뷰·기자단 설명회, 유아교육 포럼, 국민이 신뢰하는 인물·유튜버·인플루언서, 현장 취재, 학계·교원 공개토론 등

- 홍보 콘텐츠를 '처음학교로'와 연계하여 학부모 전달성 제고('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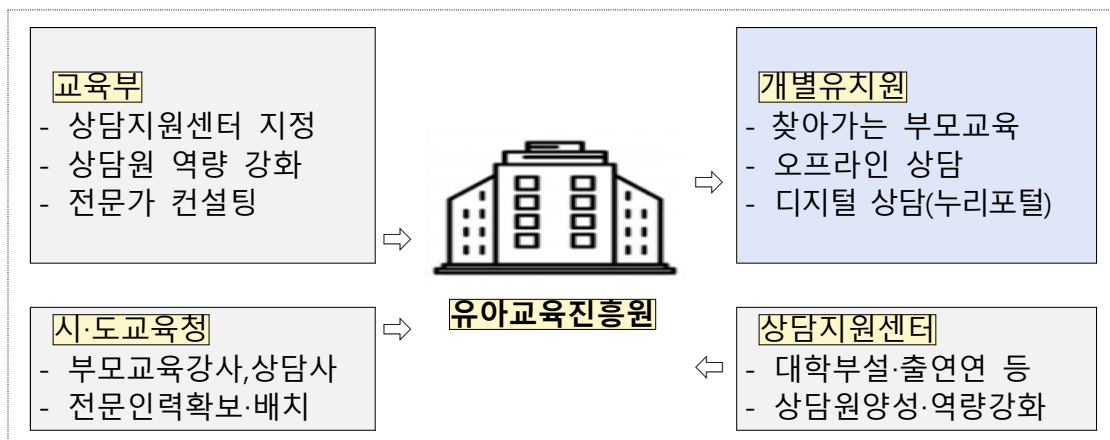
□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

- 시·도별 교육 강사·상담 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배치(위탁도 가능)

- 영유아 발달 등과 관련한 컨설턴트로 체계적 양성이 가능하도록 중앙 차원의 역량 연수 및 전문가 컨설팅 추진('24~)

※ ('23) 시도교육청 협의 → ('24~)인력배치 → ('25)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한 상담 운영 지원 체계도>



※ 지원체계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및 Wee센터(現 초중등) 연계 검토

□ 단위유치원의 현장 중심 부모교육 지원

- 지역 내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속 부모교육전문가 또는 외부강사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24~)
- 학부모의 유아기 자녀 이해 교육 및 온오프라인 상담 지원(‘24~)
 - ※ 누리과정 포털을 통한 디지털 상담, 단위유치원 찾아가는 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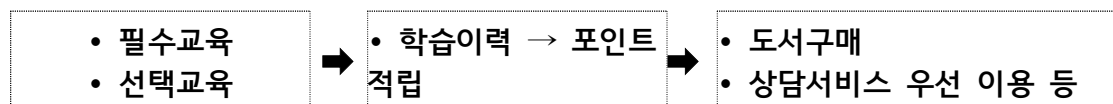
□ 디지털 기반의 체계적인 부모교육 추진

- 유아의 성장 및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기준 마련(‘23~) 및 프로그램 운영·정비(‘25~)

< (예시) 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

단계	내용
1단계	유아기의 중요성, 양육자로서 자녀 지원, 누리과정 이해, 학대 예방 등
2단계	유아기 자녀 이해, 유아의 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3단계	부모의 미디어 문해(올바른 인터넷 이용, 윤리의식, 역기능 예방)

- 학부모 지원자료와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도록 누리과정포털을 개편하여 학부모 접근성·편의성을 제고(‘25~)
 - 학부모의 디지털 교육 이력을 관리하여 관심 분야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연관된 양육정보 등을 제공하고 평생학습과도 연계
 -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학부모의 관심분야와 수요에 따라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
 - 교육 이력 누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학부모의 자발적 추가 학습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제 도입 추진



※ 양육 관련 도서 구매, 유아교육진흥원 상담서비스 우선 이용 등 검토

- 학습 이력은 원클릭으로 활용처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교육부